

※ 2024.4.15. 기준으로 이후 변동 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www.kua.go.kr](http://www.kua.go.kr)

-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청년 15~34세 병역의무기간기산 최대37세	비경험 15~69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5~34세 병역의무기간 기산최대37세	중장년 35~69세
참여 요건	가구단위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층의 경우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위탁여부		고용센터	위탁	고용센터	위탁 (수급자는 고용센터)	위탁	위탁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HRD-NET참조		자비부담률 0%(취업률 40% 미만 직종은 자부담률20%) *돌봄과정은 자비부담10%				자비부담률 15%~50% (취업률60% 미만직종은 일반훈련생보다 5%↓) *돌봄과정은 자비부담90%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일경험·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복지(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취업알선 진행					
생계 지원	구직촉진 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시 - 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1회차 구축수당 수급 요건: 방문1:1 대면상담3회 이상, 직업심리검사1종 이상 실시 및 해석 상담참여, 취업역량평가 실시, 내일을 위한 약속 교부, 취업활동계획서(IAP) 수립 및 교부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기준 금액(1,337,067원 또는 구직촉진수당 2배)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시 지급 정지,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준 금액과 신고 소득과의 차액만큼 지급			x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x				취업활동계획(IAP)수립시 15~25만원 (1회) 지원	
	조기취업 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3개월 이내(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1회		
	훈련참여 지원수당	x(훈련참여지원수당은 없으나, 훈련비 자비부담률 0~20%만 부담, 돌봄과정은 10%부담)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월 최대28.4만원(최대 6개월) 지원		
	참여장려 수당	x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3회) 지원	
취업 성공수당		(IAP수립 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취업시)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아래조건 충족자 해당> *1·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사업의 경우 수당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 □ 가구단위

- 주민등록표 등재된 신청인, 신청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만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포함 또는 제외 가능

## □ 소득·재산 범위

### ○ 소득종류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자활근로·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

### ○ 재산종류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 □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완전 취업자\*도 미취업 상태로 간주, 수급자격 인정

- \* 임금근로자는 주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는 월 250만원 미만 소득,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월 250만원 미만 소득 또는 월 1,250만원 미만 매출 발생 등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제외 대상

1유형	2유형
① 즉시 취업이 어려운자(취업예정자 포함)*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④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다만, 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국취 즉시 참여 가능) ⑤ 국가·지자체 구직활동 수당(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액 300만원 이상)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⑥ 신청인 본인 소득 중위 60% 이상인자 ⑦ 취업의사(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포함) 없는 자	① 즉시 취업이 어려운자(취업예정자 포함)*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④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인 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⑤ 국가·지자체 구직활동 수당(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액 300만원 이상) 수급 중인 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⑥ 취업의사(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포함) 없는 자

-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졸업예정자 제외)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 군복무 중인 경우(다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취업활동계획 의무이행이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

## □ 고등학교 재학생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는 고3 재학년도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일반고 졸업예정자의 경우 ①취업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참여하거나 ②“일반고 특화과정”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교 등의 재학생은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 참여 허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상급학교 진학시 취업지원서비스는 종료처리(단,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

## □ 대학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 '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4년 5월 1일부터, '25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4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등의 재학(휴학)생은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 참여 허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상급학교 진학시 취업지원서비스는 종료처리(단,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

## □ 2유형의 특정계층

- ① 기초생활수급자(일반수급자는 예외적으로 심의 등 통해 참여 결정) 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⑥ 위기청소년 ⑦ 구직단념청년 ⑧ 여성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⑩ 노무 제공자 ⑪ 건설일용직 ⑫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⑬ 미혼모(부)·한부모 ⑭ 청소년부모 ⑮ 기초연금수급자 ⑯ 영세자영업자 ⑰ 산재 장애자 ⑱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⑲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⑳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㉑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㉒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 □ '24년 중위소득(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중위소득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 □ 2유형의 특정계층 중 ⑥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등으로 진로가 불안정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 위기청소년 관련 필요서류(상황에 따라 제출) : 청소년 상담 및 보호시설(소년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의 확인서나 추천서, 개별참여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자퇴서 등의 증명서 등
  - ☑ 학교 중도탈락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대학 중퇴 등은 해당하지 않아 대학 중퇴만으로 위기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 검정고시 학력인정자로서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진학 청소년
  - ☑ 제적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실 참여서약서 제출
-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 가운데 15세 이상 18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24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 2유형의 특정계층 중 ⑦ 구직단념청년

-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 상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 교육·훈련·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인 사람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직단념청년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문답표)인 경우

##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운영

참여 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 최대 12개월(최대 6개월 연장시 18개월)			
소요 기간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 <b>인정</b> <b>1개월 이내</b>	취업활동계획(IAP)수립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운영기간		집중취업알선기간
		기본	기본		기본(의무운영)
		1개월	8개월		3개월
내용	전산망을 통한 자격검토 (행복e음) 국토부 국세청 건강보험 등	<b>대면상담 최소3회</b> 실시  -취업역량평가,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및 해석, 직업탐색 -IAP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시작일전후 7일 이내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 기관을 <b>방문</b> 하는 경우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취업특강 프로그램(최대2회) -집단상담프로그램(구직활동2회인정) -직업훈련·일경험 · 출석률80% 이상 · 10일 이상 2회, 10일 이하 1회 인정, -복지·금융지원연계프로그램	-알선지원·고용정보제공·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컨설팅 -일자리정보탐색방법 알아보기 -채용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날	
↓					
1유형	1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2회차 이후(~6회차) 구직촉진수당(기본 월 50만원)은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월2회 이상) 이행 후 <b>지정일에 방문(4차)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필수</b>			
2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수당 신청 -IAP만 수립 : 15만원 -중소기업탐방(2일이하) : 18~20만원 -단기집단취업특강심포지엄 프로그램 2회: 18~20만원 -집단상담,중소기업탐방(3일이상),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 20~25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최대 28만4천원)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80% 이상 출석시) 최대 6차까지 지원 <b>신청 필수</b>		참여장려수당 월 1회당 2만원 최대 3회	

※ 사후관리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끝난 날(취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취창업 전날,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미취업 종료자 : 구인정보 지속 제공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취·창업 종료자 :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총 150만원 한도(1·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위한 상담

○ 취업목표 및 계획 구체화

○ IAP수립 준비 및 초안 마련(과제부여, 상담일 지정 등)

상담기간	상담횟수	상담시간	상담방법
수급통지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필요 시, 7일 내 연장 가능)	3~5일 간격으로 3~6회	초기상담은 최소 30분 이상 (심층상담은 60분 권고)	1:1 대면 상담원칙